

2021년 11월 1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조례 제5799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환경교육”이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환경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의 범위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후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기후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녹색실천 등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2. 기후환경 동아리 활성화 사업

3.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4. 기후환경교육 관련 연구학교·우수학교 지정·운영 사업
5. 기후환경교육 체험 활동 및 지역단위 체험 공간 조성 사업
6.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천 교육 사업
7.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교육 관련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학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기후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4조).
- 다.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5조).
- 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마.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제8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
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5. 과학실 안전교육
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확충
3. 과학실 안전교육
4. 과학실 폐수·폐기물 등 관리
5.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6.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7조(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 설치를 할 수 있다.

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각급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구비 여부
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4.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대장 구비 여부
5.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및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학교장은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 4조 ~ 제5조).
-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규정함(제6조).
- 라.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제9조).
- 바. 과학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제11조).
- 사.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함(제12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6. 우수한 학생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에 관한 역량 및 태도를 함양하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식재산교육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제2조).
-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다.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바.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화를 위한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2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생”을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고등학교”란”을 ““학교”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를 “학교”로 한다.

제4조 중 “중·고등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복 등 직·간접적”을 “직·간접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u> 를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u>학교</u> ”란 ----- ----- <u>학교</u> -----.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u>중·고등학교</u> 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 ----- <u>학교</u> ----- -----.
제5조(지원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입학준비지원금은 <u>교복 등 직·간접적으로</u>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지원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직·간접적</u> ----- -----. ④ (현행과 같음)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202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입학준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하여 초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5803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6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20”을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3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초등학교			【별표 1】 초등학교		
번호	명칭	위치	번호	명칭	위치
46	경양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20	46	경 양 초 등 학 교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33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2023년 3월 1일 이설 예정인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중학교 시설(기숙사 등) 신축이 예정됨에 따라, 현재 휴교 상태인 이설 예정 초등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초등학교: 이설 1교
- 경양초등학교(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33)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4호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2016년 10월 개정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오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매시장 법인의 표준화역비 부담 중 규격출하품의 정의반영(안 제68조)
- 관린법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35조 제5호)
- 기타 오류문구 수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안 제47조 제6항, 안 제61조 제2항, 제3항, 안 제62조 제2항, 안 제7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gom3053@korea.kr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8층 생명농업과
- 팩스(fax) : 062-613-3969

4. 기타사항

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 1]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평가한”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 「전자거래기본법」 ”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허가일”을 “갱신허가일”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로 한다.

제47조제6항 중 “위하여 조례 제14조제7항의 심의결과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농수산물은 법 제35조의2”를 “농수산물은 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하금지, 영업제한,”을 “출하금지”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의 표준화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반입·파레트경매)

제73조 중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을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붙임 2]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생략)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 평가한 결과, 해당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1. 법 제77조제1항----- 평가 -----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 평가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자거래) ① ~ ③ (생략)	제19조(전자거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이 평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반입의무 면제한다.	④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 ----- ----- ----- -----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 제6호-----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허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 갱신 허가일-----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화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지 아니한 경우	5.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47조(대금지급) ① ~ ⑤ (생략)	제47조(대금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7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관리하여야 한다.	⑥ ----- 위하여 -----
제61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생략)	제61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 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기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농수산물은 법 제38조의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출하금지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시설사용관리) ① (생략)	제62조(시설사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해 시장이 발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제38조-----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③ (생략)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은 다음과 같다.
④ (생략)	1. 청과부류 :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반입·파레트경매)
제7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시장의 권한 중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2조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3조(권한의 위임 등) ----- ----- ----- ----- ----- ----- ----- ----- ----- ----- -----

관련법령	제4조 지정절차 관련
------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화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관련법령	제19조 전자거래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4. 12. 31.>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관련법령	제21조 중도매업 허가 등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7. 3. 21.>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5. 2. 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결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4.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5.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6.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7.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21.>

관련법령	제35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관련법령	제61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태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4. 3. 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관련법령	제62조 시설사용관리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5. 28.]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염주종합운동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부지에 염주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2021. 10. 25.

광주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 칭 : 염주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3. 사업 규모
 - 부지면적 : 486,077.0㎡
 - 증축면적 : 357.12㎡
4. 사업시행자
 - 성 명 : 광주광역시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0.
6.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토지소재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			권리자		
	동구분	지번		면적(㎡)	소유자	주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공부상	면적(㎡)		성명	주소				
1	화정동	421-8	227	22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2	풍암동	423-50	14,017	14,017					
3	화정동	407-8	35,343	35,343					
4	풍암동	423-2	436,490	436,49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6호

황룡강의 7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황룡강의 7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황룡강 외 7개 하천 유역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지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 구간		연장 (km)	비고
		기점	종점		
황룡강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 합류점	13.10	
평림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림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계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봉동 황룡강(지방) 합류점	9.80	
양동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산 135-5번지선(양동저수지 방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황룡강(지방) 합류점	3.11	

북산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482번지선(월곡계 방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평림천(지방) 합류점	2.32	
오운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운동 144-3번지선(오운계 방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평림천(지방) 합류점	2.93	
서봉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134번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 합류점	0.68	
선암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43번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합류점	1.19	
운수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197번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황룡강(국가)합류점	3.26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km ²)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량 (백만 m ³)	수자원 부족량(백만 m ³)			손실량 (백만 m ³)
				홍수시	평상시	계	
황룡강	564.30	1,276.4	720.3 (100.0%)	303.6 (42.2%)	103.4 (14.3%)	407.0 (56.5%)	313.3 (43.5%)
평림천	117.68	1,266.0	149.0 (100.0%)	63.3 (42.5%)	21.6 (14.5%)	84.9 (57.0%)	64.1 (43.0%)
양동천	5.50	1,266.0	7.0 (100.0%)	3.0 (42.5%)	1.0 (14.5%)	4.0 (57.0%)	3.0 (43.0%)
북산천	2.08	1,266.0	2.6 (100.0%)	1.1 (42.5%)	0.4 (14.5%)	1.5 (57.0%)	1.1 (43.0%)
오운천	4.68	1,266.0	5.9 (100.0%)	2.5 (42.5%)	0.9 (14.5%)	3.4 (57.0%)	2.5 (43.0%)
서봉천	1.21	1,346.4	1.6 (100.0%)	0.7 (40.0%)	0.2 (13.6%)	0.9 (53.6%)	0.8 (46.4%)
선암천	0.88	1,361.7	1.2 (100.0%)	0.5 (39.5%)	0.2 (13.5%)	0.6 (53.0%)	0.6 (47.0%)
운수천	4.45	1,361.7	6.1 (100.0%)	2.4 (39.5%)	0.8 (13.5%)	3.2 (53.0%)	2.9 (47.0%)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본 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홍수량 (m ³ /s)
황룡강	구룡천 합류점	372.62	100	1,305	-	1,305
	양동천 합류점	423.16	〃	1,565	-	1,565
	평림천 합류점	432.15	〃	1,546	-	1,546
	평림천 합류후	498.19	〃	2,192	-	2,192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본 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홍수량 (m ³ /s)	
평림천	동호교 지점	94.76	80	600	-	600	
	북산천합류점	100.16	〃	626	-	626	
	북산천합류후	102.24	〃	641	-	641	
	오운천합류점	102.47	〃	641	-	641	
	오운천합류후	107.14	〃	671	-	671	
	송산천합류점	111.04	〃	675	-	675	
	송산천합류후	113.97	〃	699	-	699	
양동천	황룡강합류점	117.68	〃	706	-	706	
	양동저수지	3.70	〃	86	-	86	
	남산교지점	5.46	〃	99	-	99	
황룡강	황룡강합류점	5.50	〃	75	-	75	
	북산천	월곡계 지점	0.77	〃	25	-	25
	평림천 합류점	2.08	〃	47	-	47	
오운천	오운계 지점	1.30	〃	29	-	29	
	비석골지점 합류점	2.90	〃	54	-	54	
	비석골지점 합류후	3.21	〃	61	-	61	
	도미교 지점	4.02	〃	63	-	63	
	평림천 합류점	4.68	〃	69	-	69	
서봉천	과업 시점	0.64	〃	12	-	12	
	황룡강 합류점	1.21	〃	25	-	25	
선암천	과업 시점	0.40	〃	8	-	8	
	암거지점	0.69	〃	17	-	17	
	황룡강 합류점	0.88	〃	21	-	21	
운수천	과업 시점	0.54	〃	13	-	13	
	한당골지점 합류점	1.30	〃	30	-	30	
	한당골지점 합류후	1.77	〃	41	-	41	
	서당골지점 합류점	2.06	〃	44	39	5	
	서당골지점 합류후	3.64	〃	75	-	75	
황룡강 합류점	4.45	〃	78	-	78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회홍수량계회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 점	유역 면적 (km ²)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 m)	계 획 하 폭 (m)
황룡강	구룡천 합류점	372.62	100	1,305	1,375	31.94	291
	왕동천 합류점	423.16	〃	1,565	1,565	23.23	220
	평림천 합류점	432.15	〃	1,546	1,565	22.26	419
	평림천 합류점	498.19	〃	2,192	2,195	22.26	419
평림천	동호교 지점	94.76	80	600	560	26.92	70
	북산천합류점	100.16	〃	626	580	25.06	135
	북산천합류점	102.24	〃	641	595	25.06	135
	오운천합류점	102.47	〃	641	595	24.95	111
	오운천합류점	107.14	〃	671	620	24.95	111
	송산천합류점	111.04	〃	675	630	22.62	136
	송산천합류점	113.97	〃	699	650	22.62	136
	황룡강합류점	117.68	〃	706	660	22.25	163
왕동천	왕동저수지	3.70	〃	86	90	52.75	8
	남산교지점	5.46	〃	99	100	26.97	12
	황룡강합류점	5.50	〃	75	100	23.15	30
북산천	월곡계 지점	0.77	〃	25	30	52.73	12
	평림천 합류점	2.08	〃	47	50	24.97	67
오운천	오운계 지점	1.30	〃	29	30	42.47	29
	비석골지점 합류점	2.90	〃	54	55	31.43	18
	비석골지점 합류점	3.21	〃	61	65	31.43	18
	도덕교 지점	4.02	〃	63	65	26.30	20
서봉천	과업 시점	0.64	〃	12	15	56.74	6
	황룡강 합류점	1.21	〃	25	30	21.32	9
선암천	과업 시점	0.40	〃	8	10	39.16	8
	암거지점	0.69	〃	17	20	22.60	8
	황룡강 합류점	0.88	〃	21	25	17.79	8

하천명	지 점	유역 면적 (km ²)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 m)	계 획 하 폭 (m)
운수천	과업 시점	0.54	〃	13	15	75.82	6
	한당골지점 합류점	1.30	〃	30	30	39.12	18
	한당골지점 합류점	1.77	〃	41	45	39.12	18
	서당골지점 합류점	2.06	〃	44	5	25.00	5
	서당골지점 합류점	3.64	〃	75	75	25.00	5
	황룡강 합류점	4.45	〃	78	80	16.33	26

5. 별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km)	면적(km ²)	비 고
황룡강	0+000 ~ 1+200	좌안	친수지구	친수거점	1.20	0.19
	1+200 ~ 13+095		복원지구	복원	11.90	1.27
	0+000 ~ 1+200	우안	친수지구	친수거점	1.20	0.22
	1+200 ~ 6+900		복원지구	복원	5.70	0.71
	6+900 ~ 8+300		친수지구	근린친수	1.40	0.16
8+300 ~ 13+000	복원지구	복원	4.70	0.56		
평림천	0+000 ~ 9+800	좌안	복원지구	복원	9.80	0.56
	0+000 ~ 3+900		보전지구	일반보전	3.90	0.27
	3+900 ~ 5+757	우안	복원지구	복원	1.90	0.09
	5+757 ~ 6+500		보전지구	일반보전	0.70	0.05
	6+500 ~ 9+800		복원지구	복원	3.30	0.17
왕동천	0+000 ~ 3+109	좌안	복원지구	복원	3.11	0.04
	0+000 ~ 2+541		복원지구	복원	2.54	0.04
	2+541 ~ 3+109	우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0.57	0.005
	0+000 ~ 0+846		복원지구	복원	0.85	0.01
북산천	0+846 ~ 1+490	좌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0.64	0.004
	1+490 ~ 2+324		복원지구	복원	0.83	0.01
	0+000 ~ 1+560	우안	복원지구	복원	1.56	0.02
	1+560 ~ 2+324		보전지구	일반보전	0.76	0.003
	0+000 ~ 2+934		복원지구	복원	2.93	0.04
0+000 ~ 2+934	우안	복원지구	복원	2.93	0.04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km)	면적(km ²)	비 고
서봉천	0+000 ~ 0+462	좌안	복원지구	복원	0.46	0.003
	0+462 ~ 0+676		보전지구	일반보전	0.21	0.001
	0+000 ~ 0+462	우안	복원지구	복원	0.46	0.005

구간	안별	지구구분	연장(km)	면적(km ²)	비 고
0+462 ~ 0+676	좌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0.21	0.001
0+000 ~ 1+192		복원지구	복원	1.19	0.01
0+000 ~ 1+020		우안	복원지구	복원	1.02
1+020 ~ 1+192	우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0.17	0.0004
0+000 ~ 3+258		복원지구	복원	3.26	0.02
0+000 ~ 3+258	우안	복원지구	복원	3.26	0.02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황룡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청(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시민안전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7호

황룡강 의 8개 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황룡강 의 8개 하천의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광주광역시청 및 광산구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m ²)	결정(변경)일,사유
		기 점	종 점	연장 (km)		
황룡강	지방	광주 광산구 평산동 광주 전라남도 경계 (No.13+000)	광주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합류점 (No.0+000)	13.10	3,104,839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평림천	지방	광주 광산구 동림동 광주 전라남도 경계 (No.10+000)	광주 광산구 지평동 황룡강(지방)합류점 (No.0+000)	9.80	1,079,220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왕동천	지방	광주 광산구 왕동 산 135-5번지선 (No.3+100)	광주 광산구 송지동 황룡강(지방)합류점 (No.0+000)	3.11	87,409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북산천	지방	광주 광산구 명도동 482번지선 (No.2+300)	광주 광산구 명도동 평림천(지방)합류점 (No.0+000)	2.32	54,061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오운천	지방	광주 광산구 오운동 144-3번지선 (No.2+900)	광주 광산구 살도동 평림천(지방)합류점 (No.0+000)	2.93	86,974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송산천	지방	광주 광산구 도덕동 52-2번지선 (No.17+80)	광주 광산구 송산동 평림천(지방)합류점 (No.0+000)	1.79	51,713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서봉천	지방	광주 광산구 서봉동 134번지선 (No.0+675)	광주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합류점 (No.0+000)	0.68	9,996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m ²)	결정(변경)일,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선암천	지방	광주 광산구 선암동 443번지선 (No.1+192)	광주 광산구 서봉동 황룡강(국가)합류점 (No.0+000)	1.19	17,602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운수천	지방	광주 광산구 운수동 197번지선 (No.3+200)	광주 광산구 선암동 황룡강(국가)합류점 (No.0+000)	3.26	41,949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면 발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1호(2019.6.20.) 및 광주광역시고시 제 2020-432호(2020.10.22.), 제2021-226호(2021.6.24.)로 고시되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 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북구 중흥동
- 나. 규모 : 연장 17.005km, 정거장 20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 나. 명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 나. 성명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20일 ~ 2023년 12월 31일(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가. 결정취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 조서

(1) 차량기지 : 1개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	67,493	광고67호 '18. 4. 1.	

(2) 본 선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	철도 (2호선)	도시 철도	서구 동천동 92답	북구 중흥동 378-6도	운천저수지, 광주월드컵 경기장	17,005	157,533.4	광고88호 '17. 5. 1.	

(3) 정거장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합 계			정거장 20개소			1,385	38,459.7	광고88호 '17. 5. 1.	
기정	2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1정거장)	서구 치평동 1187-1도	서구 치평동 1214도		51	2,051		상대식
기정	2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2정거장)	서구 치평동 1235도	서구 치평동 1181-1도		50	1,724		〃
기정	2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3정거장)	서구 치평동 1260-1도	서구 마북동 793-17대		70	2,689.7		〃
기정	2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4정거장)	서구 쌍촌동 1263도	서구 쌍촌동 1263도		68	1,960		〃
기정	2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5정거장)	서구 금호동 744도	서구 금호동 744도		66	1,603		〃
기정	2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6정거장)	서구 금호동 780도	서구 금호동 780-1도		53	1,688		〃
기정	2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7정거장)	서구 풍암동 423-2제	서구 풍암동 423-2제		80	1,652		〃
기정	3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8정거장)	서구 풍암동 858-2도	서구 풍암동 858-2도		76	2,238		〃
기정	3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9정거장)	서구 풍암동 858-3도	서구 풍암동 858-3도		63	1,595		〃
기정	3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0정거장)	남구 주월동 1010-1도	남구 주월동 1010-1도		70	1,576		〃

기정	3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1정거장)	남구 주월동 1290-1	남구 주월동 1290-1		147	3,586		〃
기정	3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2정거장)	남구 주월동 1290-1	남구 방림동 548-1		65	1,530		〃
기정	3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3정거장)	남구 방림동 343-3	남구 방림동 343-3		55	1,891		〃
기정	3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4정거장)	동구 학동 55-151	동구 학동 55-151		68	1,543		〃
기정	3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5정거장)	동구 서석동 421-1	동구 서석동 421-1		68	2,317		〃
기정	3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6정거장)	동구 지산동 724-2도	동구 지산동 724-2도		62	1,533		〃
기정	3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7정거장)	동구 산수동 561-1도	동구 산수동 561-1도		64	1,555		〃
기정	4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8정거장)	동구 계림동 594-2도	북구 풍향동 595-1도		73	1,588		〃
기정	4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9정거장)	북구 중흥동 378-6도	북구 중흥동 378-6도		68	2,504		〃
기정	4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8정거장)	서구 유촌동 594-7답	서구 유촌동 598-9답		68	1,636		〃

(4) 환기구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 계			환기구 20개소	14,279.3	광고88호 '17. 5. 1.	
기정	20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1환기구)	서구 치평동 1235도	737		
기정	20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2환기구)	서구 치평동 1253도	737		
기정	20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3환기구)	서구 쌍촌동 871-2도	865		
기정	20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4환기구)	서구 금호동 774도	743		
기정	20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5환기구)	서구 금호동 777도	834		
기정	20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6환기구)	서구 풍암동 421-7도	746		
기정	20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7환기구)	서구 풍암동 383-8도	888		
기정	20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8환기구)	서구 풍암동 858-3도	795		
기정	20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9환기구)	남구 주월동 20-11도	814		
기정	21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0환기구)	남구 주월동 1010-4도	776.3		
기정	21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1환기구)	남구 주월동 1290-1도	823		
기정	21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2환기구)	남구 방림동 396-5도	746		
기정	21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3환기구)	동구 학동 1025도	301		
기정	21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4환기구)	동구 서석동 465-2도	393		
기정	21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5환기구)	동구 동명동 126-1도	750		
기정	21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6환기구)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기정	21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7환기구)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기정	21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8환기구)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기정	21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8환기구)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기정	22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7환기구)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남구 주월동 `북구 중흥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 명 칭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3) 사업규모 및 면적

- o 본 선
- 기정 : 17.005km (면적 157,533.4㎡)
- o 차량기지 : 1개소 (면적 67,493㎡)
- o 정 거 장
- 기정 : 20개소 (면적 38,459.7㎡)
- o 환 기 구
- 기정 : 20개소 (면적 14,27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북동)
-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사업기간

- 2019. 6. 20. ~ 2023. 12. 31.

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계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지형도면 고시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판보게제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변경)

- 변경사유 : 보행자 통로 확보

[편입용지 세목조서]

연번	지번	면적		편입면적구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내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변경	당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1	1	터	2-5	담	2,876,180.0	2,870,180.0									
2	2	터	2-21	담	1,124,112.0	1,124,112.0									
3	3	터	2-6	담	4,000,000.0	4,000,000.0									
4	4	터	2-7	담	2,274,000.0	2,274,000.0									
5	5	터	2-8	담	1,726,000.0	1,726,000.0									
6	6	터	2-9	담	4,000,000.0	4,000,000.0									
7	7	터	2-10	담	4,000,000.0	4,000,000.0									
8	8	터	43	구	1,230,366.0	1,230,366.0									
9	9	터	45	구	2,658,000.0	2,658,000.0									
10	10	터	3-5	담	4,000,000.0	4,000,000.0									
11	11	터	3-6	담	1,755,000.0	1,755,000.0									
12	12	터	3-7	담	2,245,000.0	2,245,000.0									
13	13	터	3-8	담	707,000.0	707,000.0									
14	14	터	3-9	담	2,046,000.0	2,046,000.0									
15	15	터	3-10	담	1,246,000.0	1,246,000.0									
16	16	터	3-11	담	410,000.0	410,000.0									
17	17	터	3-12	담	3,590,000.0	3,590,000.0									
18	18	터	3-13	담	4,000,000.0	4,000,000.0									
19	19	터	3-14	담	4,000,000.0	4,000,000.0									
20	20	터	3-15	담	1,871,000.0	1,871,000.0									
21	21	터	3-16	담	2,129,000.0	2,129,000.0									
22	22	터	3-17	담	1,164,000.0	1,164,000.0									
23	23	터	3-18	담	2,836,000.0	2,836,000.0									
24	24	터	3-19	담	499,000.0	499,000.0									
25	25	터	3-20	담	1,977,000.0	1,977,000.0									
26	26	터	3-21	담	1,319,000.0	1,319,000.0									
27	27	터	3-22	담	2,103,000.0	2,103,000.0									
28	28	터	3-23	담	2,102,000.0	2,102,000.0									
29	29	터	46	도	3,517,494.0	3,510,494.0									
30	30	동	92	담	1,818,333.0	1,818,333.0			178.0	155.0		178.0	155.0		
31	31-93	동	93-2	담	1,041,336.0	1,040,336.0			188.0	148.0		188.0	148.0		

연번	지번	면적		편입면적구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내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변경	당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번
32	동	94-1	94-1	담	190,078.0	190,078.0					78.0				
33	동	111	111	도	3,468,000.0	3,468,000.0			50.0		50.0				
34	유	621	621	구	2,169,000.0	2,169,000.0			214.0		214.0				
35	유	604	604	구	496,000.0	496,000.0					496.0				
35	유	604-3	604-3	구	225,000.0	225,000.0			178.0		178.0				
36	유	591-1	591-1	대	659,000.0	659,000.0					659.0				
37	유	591-2	591-2	대	4,078,000.0	4,078,000.0					4,078.0				
38	유	591-3	591-3	담	1,610,000.0	1,610,000.0					1,610.0				
39	유	591-4	591-4	담	926,000.0	926,000.0					926.0				
40	유	591-5	591-5	담	4,000,000.0	4,000,000.0			3,872.0		3,872.0				
41	유	590-5	590-5	담	356,000.0	356,000.0			1.0		1.0				사용일로부터 16개월
41	유	590-43	590-43	담	2,153,000.0	2,153,000.0			2,095.0		2,095.0				
42	유	591-6	591-6	담	853,000.0	853,000.0					853.0				
42	유	591-36	591-36	담	3,323,000.0	3,323,000.0			2,923.0		2,923.0				
43	유	603	603	구	1,101,000.0	1,101,000.0					40.0				
44	유	590-20	590-20	도	22.0	22.0			4.0		4.0				
45	유	590-21	590-21	담	88.0	88.0					88.0				
46	유	590-42	590-42	장	162,000.0	162,000.0			81.0		81.0				
47	유	590-44	590-44	담	2,207,000.0	2,207,000.0			1,356.0		1,356.0				
48	유	591-33	591-33	담	1,010,000.0	1,010,000.0			499.0		499.0				
49	유	605	605	도	1,679,000.0	1,679,000.0			127.0		127.0				
50	유	606	606	구	1,025,000.0	1,025,000.0			82.0		82.0				
51	유	592-6	592-6	담	959,000.0	959,000.0					6.0				
51	유	592-26	592-26	담	33.0	33.0			4.0		4.0				
52	유	592-7	592-7	담	962,000.0	962,000.0			55.0		55.0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구분						소유권		사유기간	비고		
			당초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성명	주소				
						지하	지상	지상								
당초	변경	지하	지하	지상	지상	지상	지하	지상	지상	성명	주소					
52	유촌	592-592-27	담	584.0	507.0	584.0	507.0	163.0		444.0	163.0	444.0	김**	광주북구중흥동		
53	유촌	592-592-28	담	2,182.0	1,981.0	2,181.0	1,981.0	1,083.0		898.0	1,083.0	898.0	김**	광주서구유촌동		
54	유촌	592-592-29	담	1,437.0	1,022.0	1,431.0	1,022.0	413.0		809.0	413.0	809.0	정**	광주광역시서구동천동		
55	유촌	592-592-25	담	397.0	128.0	397.0	128.0		128.0			128.0	김**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		
56	유촌	607-607-3	구	272.0	206.0	272.0	206.0	86.0		120.0	86.0	120.0	국	동림축산식품부		
57	유촌	593-593-20	담	1,624.0	1,294.0	1,624.0	1,294.0	454.0		840.0	454.0	840.0	조**	광주서구동천동	근저당권설정	
58	유촌	593-593-6	담	936.0	934.0	936.0	934.0	533.0		401.0	533.0	401.0	정**	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		
59	유촌	593-593-23	담	1,863.0	1,399.0	1,861.0	1,399.0	537.0		862.0	537.0	862.0	홍**	광주서구봉암동	광주광역시	
60	유촌	593-593-24	담	205.0	36.0	205.0	36.0		36.0			36.0	공	광주광역시동림축산식품부		
61	유촌	615-615-3	도	184.0	126.0	184.0	126.0	48.0		78.0	48.0	78.0	국	동림축산식품부		
62	유촌	616-616-1	구	1,408.0	1,230.0	1,408.0	1,230.0	51.0		72.0	51.0	72.0	국	동림축산식품부		
63	유촌	594-594-6	담	4,369.0	1,390.0	4,368.0	1,390.0		139.0			139.0	김**	광주서구유촌동	사유일로부터2개월	
63	유촌	594-594-25	담	75.0	57.0	75.0	57.0	38.0		19.0	38.0	19.0	김**	광주서구유촌동		
63	유촌	594-594-29	담	95.0	95.0	95.0	95.0		95.0			95.0	공	광주광역시		
64	유촌	594-594-7	담	439.0	157.0	439.0	157.0		157.0			157.0	최**	광주북구두암동	광주광역시	사유일로부터2개월
64	유촌	594-594-26	담	403.0	391.0	403.0	391.0	293.0		98.0	293.0	98.0	공	광주광역시		
64	유촌	594-594-30	담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공	광주광역시		
65	유촌	594-594-8	담	133.0	110.0	133.0	110.0		110.0			110.0	정**	광주서구유촌동	광주광역시	사유일로부터2개월
65	유촌	594-594-27	담	2,242.0	2,242.0	2,242.0	2,242.0	1,907.0		335.0	1,907.0	335.0	정**	광주서구유촌동	광주광역시	
65	유촌	594-594-31	담	75.0	75.0	75.0	75.0		75.0			75.0	공	광주광역시		
66	유촌	594-594-9	담	1,635.0	264.0	1,638.0	264.0		264.0			264.0	최**	광주서구유촌동	광주광역시	사유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구분						소유권		사유기간	비고		
			당초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성명	주소				
						지하	지상	지상								
당초	변경	지하	지하	지상	지상	지상	지하	지상	지상	성명	주소					
66	유촌	594-594-28	담	1,952.0	1,749.0	1,952.0	1,749.0	1,076.0		873.0	1,076.0	873.0	최**	광주서구유촌동	광주광역시	사유일로부터2개월
66	유촌	594-594-32	담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공	광주광역시		
67	유촌	617-617-3	구	859.0	8.0	859.0	8.0	3.0		5.0	3.0	5.0	국	동림축산식품부		
67	유촌	617-617-3	구	186.0	147.0	186.0	147.0	45.0		102.0	45.0	102.0	국	동림축산식품부		
68	유촌	598-598-8	담	3,669.0	3,668.0	3,668.0	3,668.0		1.0			1.0	최**	광주서구양동	사유일로부터23개월	
68	유촌	598-598-24	담	331.0	69.0	331.0	69.0		69.0			69.0	최**	광주서구양동		
69	유촌	598-598-25	담	2,137.0	1,539.0	2,131.0	1,539.0	504.0		1,035.0	504.0	1,035.0	정**	광주광역시구원계동		
70	유촌	598-598-16	담	1,045.0	865.0	1,045.0	865.0	348.0		517.0	348.0	517.0	문**	광주서구덕흥동		
71	유촌	598-598-26	담	1,393.0	595.0	1,394.0	595.0	115.0		480.0	115.0	480.0	김**	광주북구중흥동		
72	유촌	618-618-1	도	1,607.0	1,060.0	1,607.0	1,060.0	33.0		73.0	33.0	73.0	국	동림축산식품부		
73	유촌	619-619-8	구	104.0	68.0	104.0	68.0	21.0		47.0	21.0	47.0	국	동림축산식품부		
74	유촌	599-599-39	담	875.0	854.0	875.0	854.0	32.0		322.0	32.0	322.0	김**	광주북구중흥동		
75	유촌	599-599-37	담	1,187.0	934.0	1,187.0	934.0	405.0		529.0	405.0	529.0	김**	광주북구중흥동		
76	유촌	599-599-11	담	180.0	7.0	180.0	7.0		7.0			7.0	최**	광주서구유촌동	사유일로부터30개월	
76	유촌	599-599-38	담	1,083.0	984.0	1,083.0	984.0	431.0		553.0	431.0	553.0	최**	광주서구유촌동		
77	유촌	599-599-12	담	867.0	14.0	867.0	14.0		14.0			14.0	오**	광주서구유촌동	광주광역시	사유일로부터30개월
78	유촌	599-599-27	담	50.0	38.0	50.0	38.0		38.0			38.0	공	광주광역시(교육간)		
78	유촌	599-599-43	담	227.0	190.0	227.0	190.0	6.0		184.0	6.0	184.0	공	광주광역시(교육간)		
79	유촌	599-599-41	담	224.0	88.0	224.0	88.0	65.0		23.0	65.0	23.0	공	광주광역시(교육간)		
80	유촌	350-350-0	도	12,702.0	909.0	12,702.0	909.0	2,385.0		524.0	2,385.0	524.0	공	광주광역시		
81	유촌	352-352-1	도	26,872.0	2,297.0	26,872.0	2,297.0	1,921.0		376.0	1,921.0	376.0	공	광주광역시		
82	유촌	340-340-1	전	714.0	232.0	714.0	232.0	191.0		41.0	191.0	41.0	공	광주광역시		
83	유촌	342-342-7	전	205.0	131.0	205.0	131.0	118.0		13.0	118.0	13.0	공	광주광역시		
84	유촌	342-342-2	전	96.0	64.0	96.0	64.0	55.0		9.0	55.0	9.0	공	광주광역시		
85	유촌	342-342-10	전	81.0	9.0	81.0	9.0	6.0		3.0	6.0	3.0	공	광주광역시		
86	유촌	342-342-6	전	36.0	3.0	36.0	3.0		3.0			3.0	김**	광주북구운암동	사유일로부터26개월	

Table with columns: 연번, 지번, 면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구분 (지하, 지상), 소유자 (국, 공, 민, 기타), 소유권 (국토, 교통, 일반, 기타), 사후 (기, 전, 후), 비고. Rows include various land parcels with detailed area and ownership data.

Table with columns: 연번, 지번, 면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구분 (지하, 지상), 소유자 (국, 공, 민, 기타), 소유권 (국토, 교통, 일반, 기타), 사후 (기, 전, 후), 비고. Rows include various land parcels, some marked as '국토' or '국'.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9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7호선) 실시계획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7호선)사업 시행 중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1. 10. 29.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가. 위 치 : 동구 서석동 4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7호선)사업

나. 명 칭 : 동구청-조대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시설명	총규모	금회시행	비고
대로2-37호선	L=375m, B=30m	L=375m, B=30m, A=11,236.2㎡	광고 34호 '05.4.1.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장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20. 8. 1. ~ 2021. 12. 31.

나. 변 경 : 2020. 8. 1. ~ 2023. 12. 31. (증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없음)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94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송대하수처리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0. 29.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하수도

가. 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하수도	송대하수처리장	광산구 분덕동 유계동 일원	161,882	감8,339	153,543	

나.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	하수도	송대하수처리장	· 시설면적 변경 161,882㎡ → 153,543㎡	· 구적의 면적 추가 반영 · 사유지 계획 · 편입토지 공부면적 반영 정정	

다. 편입토지 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지 적			편 입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합계			153,573		153,543	161,882	8,339	153,543		
1	분덕동746	전	536		536	536		536	광주광역시	
2	분덕동753	전	118		118	118		118	국(국토부)	
3	분덕동754	답	1,448		1,448	1,448		1,448	광주광역시	
4	분덕동760	전	30,337		30,337	30,337		30,337	광주광역시	
5	분덕동762	답	40,998		40,998	40,998		40,998	광주광역시	
6	분덕동822	전	3,068		3,068	3,068		3,068	광주광역시	
7	분덕동831	답	10,402		10,402	10,402		10,402	광주광역시	
8	분덕동838	전	190		190	190		190	국(국토부)	
9	분덕동1140	도	664		664	664		664	국(국토부)	
10	분덕동1141-1	전	2,400		2,400	2,400		2,400	국(국토부)	
11	분덕동1144	전	3,150		3,150	3,150		3,150	광주광역시	
12	분덕동1149	도	26		26	26		26	광산구	
13	분덕동1151	전	250		250	250		250	광산구	
14	분덕동1153	도	66		66	66		66	광산구	
15	분덕동1153-1	도	119		119	119		119	광주광역시	
16	분덕동1154	전	488		488	488		488	광주광역시	
17	분덕동1155	잡	13,155		13,155	13,155		13,155	광주광역시	
18	분덕동1156	답	2,471		2,471	2,471		2,471	광주광역시	
19	분덕동766-1	전	87		87	87		87	국(국토부)	
20	분덕동778-1	전	45		45	45		45	국(기재부)	
21	유계동86-4	전	9,593		9,593	9,593		9,593	광주광역시	
22	유계동86-6	전	268		268	268		268	국(국토부)	
23	유계동87-3	계	95		95	95		95	국(국토부)	
24	유계동88-2	계	3		3	3		3	국(국토부)	
25	유계동96-2	계	13		13	13		13	국(국토부)	
26	유계동98-8	전	1,408		1,408	1,408		1,408	국(국토부)	
27	유계동101-2	전	305		305	305		305	광주광역시	
28	유계동604-1	답	5,183		5,183	5,183		5,183	광주광역시	
29	유계동1098-5	전	1,954		1,954	1,954		1,954	광산구	
30	유계동1098-7	잡	5,310		5,310	5,310		5,310	광주광역시	
31	유 계 동 1098-18	잡	3,665		3,665	3,665		3,665	광주광역시	구 적 외 면적 추 가 반영
32	유 계 동 1098-21	전	670		670	670		670	국(국토부)	
33	유 계 동 1098-22	전	9,554		9,554	9,554		9,554	광산구	
34	유 계 동 1141-15	계	72		72	72		72	국(농림부)	
35	분덕동759	답	5,432		5,432	5,374	증58	5,432	광주광역시	사 유 지 계획
36	유계동100-3	전	30	감30	-	30	감30	-	서성모	편입토지의 오류 면적
						8,367	감 8,367	-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 : 첨부(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19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63호(2021. 6. 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주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8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칭 : 월산 1구역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총 계획	금회시행		
공원	어린이공원	월산동 283-2	2,051.5	2,051.5	광고 2011-96 '11. 7. 15.	

4.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27, 2층(월산동)
- 성 명 :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조합장 임묘목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21. 6. 1.
- 준공예정일 : (당초) 2021. 9. 31. → (변경) 2021. 11. 30.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면적(㎡)	면적(㎡)		소유자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종류 및 내용	비고
					총계획	금회시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15필지			3,582	2,051.5	2,051.5	-	-	-	-	-	-	-
1	남구 월산동	281-2	대	126	85.06	85.06	광주 서구 평촌동 452-22 일신아파트 103동 102호	박*오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2	남구 월산동	281-5	대	114	25.10	25.10	전남 함평군 함평읍 홍용길 45-3	문*인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3	남구 월산동	281-11	대	86	12.80	12.80	광주 광산구 칠단강변로 100, 110동 803호(쌍암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	장*의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4	남구 월산동	283-1	대	205	182.65	182.65	광주 광산구 목원로153번길 134, 610동 1106호(은남동, 주공아파트)	홍*석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5	남구 월산동	283-2	전	910	910.00	910.00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6	남구 월산동	283-3	대	98	98.00	98.00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7	남구 월산동	283-4	도	1,296	346.52	346.52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8	남구 월산동	289-9	도	145	2.76	2.76	광주 남구 월산로127, 2층(월산동) 월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	-
9	남구 월산동	289-15	대	63	4.61	4.61	광주 남구 효천3로 110, 210동 1802호(일암동 중흥에스클레라스에코파크)	김*순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10	남구 월산동	289-16	대	122	109.70	109.70	광주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107동 813호(전월동, 대주아파트)	이*선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11	남구 월산동	289-18	대	76	53.33	53.33	광주 남구 구성로20번길 26(월산동)	박*자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12	남구 월산동	289-21	대	155	78.74	78.74	광주 서구 월산로210, 2동 403호(농성동, 중흥아파트)	심*순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13	남구 월산동	289-22	도	33	33.00	33.00	광주 남구 월산로127, 2층(월산동) 월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	-	-	-	-
14	남구 월산동	289-26	대	90	90.00	90.00	광주 남구 구성로20번길 28(월산동)	문*애	1/2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15	남구 월산동	289-27	대	63	19.23	19.23	광주 남구 월산로127, 2층(월산동) 월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근	1/2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주태도시보증공사	근저당	-

6.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변경없음)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0호

광주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공원, 공공공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공원, 공공공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2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 도로

노선명	총 계획	금회시행	비고
중로2류 506호선	L=516.0m, B=15.0-18.0m	L=516.0m, B=15.0-18.0m	개설기부채납
소로1류 400호선	L=168.0m, B=10.0m	L=168.0m, B=10.0m	

○ 공원 및 공공공지

노선명	총 계획	금회시행	비고
공원420	A=1527.8㎡	A=1527.8㎡	기부채납
공원404	A=2206.6㎡	A=2206.6㎡	
공원405	A=1166.7㎡	A=1166.7㎡	
공공공지192	A=240.6㎡	A=240.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23
- 성 명 :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중로2-506호선											
1	운암	252	대	49,088.70	17.4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송봉호	광주 서구 쌍문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2	운암	294	대	58,353.9	120.9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송봉호	광주 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3	운암	318	대	50,681.3	1,763.5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4	운암	319	도	10,878.6	7,594.3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5	운암	265	학	14,489.9	23.8	광주광역시교육감				
■ 소토1-400호선										
1	운암	318	대	50,681.3	1,874.3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 경양어린이 공원										
1	운암	318	대	50,681.3	1,527.8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68-85				
■ 404 소공원										
1	운암	252	대	49,088.70	2,206.0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 405 소공원										
1	운암	318	대	50,681.3	1,166.7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 공공공지										
1	운암	252	대	49,088.70	240.6	김성윤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28동 101호			
						대한주 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승봉호	광주 서구 쌍촌동 964-5			
						위정호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4동 1002호			
						이선진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38동 301호			
						정재출	광주 동구 계림동 168-85			
합계				183,492.4	16,535.3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3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 주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 : 중흥동 소공원 1, 2)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자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중흥동 소공원1

시설명	구분	사업규모(㎡)		비고 (최소 결정고시)
		총 면적		
공원 (중흥동 소공원1)	합계	1,848.0		광고 69호 (* 13, 05. 15.)
	공원시설	271.4		
	도로 및 광장	271.4		
	녹지	1,576.6		

○ 중흥동 소공원1

시설명	구분	사업규모(㎡)		비고 (최소 결정고시)
		총 면적		
공원 (중흥동 소공원1)	합계	1,553.1		광고 69호 (* 13, 05. 15.)
	공원시설	304.5		
	도로 및 광장	304.5		
	녹지	1,248.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성 명 :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민병진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불입,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 ☎062-410-672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공원1)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비고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소 계					2,316.3	1,848				
1	북구	중흥	361-33	대	127.9	127.9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31번안길 2, 105동 204호	박문철, 정경희		
2	북구	중흥	361-3	대	146.5	146.5	광주광역시 동구 발실로 100, 101동 404호	이기숙		
3	북구	중흥	361-29	대	165.9	165.9	광주광역시 북구 와우로 9-1	이환희, 최영남	주택도시보증 공사	
4	북구	중흥	361-7	대	159.1	159.1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5	북구	중흥	361-6	대	144.1	144.1	광주광역시 서구 서남대로 749번길 30, 801동 505호	정윤면		
6	북구	중흥	361-13	대	125.3	125.3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9-4	박진홍		
7	북구	중흥	361-15	도	53.7	22.7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8	북구	중흥	361-14	대	125.3	112.1	광주광역시 서구 정열로143번길 15-8 (양동)	김남순, 김성규		
9	북구	중흥	361-16	대	131.2	14.0	광주광역시 서구 수등로123번길 21, 104동 1601호	서동규		
10	북구	중흥	361-17	대	143.1	99.6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3-9 (중흥동)	이정기, 이해규	주택도시보증 공사	
11	북구	중흥	361-45	대	162.1	121.7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69번길 46, 207동 501호	구재봉	주택도시보증 공사	
12	북구	중흥	361-46	대	133.0	72.3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3	북구	중흥	361-9	대	151.6	18.9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4	북구	중흥	361-44	대	116.0	116.0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667	이순남	주택도시보증 공사	

15	북구	중흥	361-43	대	95.0	71.3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6	북구	중흥	361-42	도	21.0	18.3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7	북구	중흥	361-41	대	95.0	91.8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8	북구	중흥	361-55	대	106.7	106.7	광주광역시 북구 탁영로 33, 101동 901호	박해숙, 김홍구	주택도시보증 공사	
19	북구	중흥	361-34	대	113.8	113.8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 181번길 16, 103동 1204호	임종원, 조수아	주택도시보증 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공원2)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비고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소 계					7,992.8	1,553.1				
1	북구	중흥	280-4	대	159.1	105.8	광주 동구 중앙로 358,203동 1404호	박경자, 이상만	주택도시보증 공사	
2	북구	중흥	280-5	대	158.9	158.9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35-1, 204동 803호	선신연	주택도시보증 공사	
3	북구	중흥	280-15	대	165.5	112.6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10-6	조오남, 정공필	주택도시보증 공사	
4	북구	중흥	280-14	대	151.5	151.5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10-8(중흥동)	송학용	주택도시보증 공사	
5	북구	중흥	280-13	대	153.0	15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단중앙로 181번길 42-5, 106동 1205호	박성창	주택도시보증 공사	
6	북구	중흥	6-3	도	5,813.1	64.8	광주광역시 서구 내밭로 111		광주광역시	주택도시보증 공사
7	북구	중흥	280-19	대	159.7	159.7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46번길 10, 102동 805호(매곡동, 금향타운)	신남식, 김민숙	주택도시보증 공사	
8	북구	중흥	280-23	대	132.0	85.1	광주 북구 중흥동 280-33	양금숙		
9	북구	중흥	280-35	대	169.9	57.5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0	북구	중흥	280-22	대	186.2	8.5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38(중흥동)	강지성	주택도시보증 공사	
11	북구	중흥	280-20	대	151.8	103.2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0	민병진, 이민순	주택도시보증 공사	
12	북구	중흥	280-11	대	150.1	10.8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3	북구	중흥	280-12	대	159.3	154.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12	양근열		
14	북구	중흥	280-7	대	141.5	85.6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 3층 (중흥동)	중흥3구역주 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5	북구	중흥	280-6	대	141.2	141.2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6-19 (중흥동)	박경자	주택도시보증 공사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4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주변 광주도시계획시설(중로2-503, 중로 3-222, 중로3-223, 중로3-224, 중로3-225, 중로3-226, 소로1-6, 교차점광장)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북구 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신용동 81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03 외 7개소)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로

노선명	총 계획	금회시행	비고
중로2류 503호선	L=582m, B=15m	L=582m, B=15m	
중로3류 222호선	L=227m, B=12m	L=227m, B=6m	
중로3류 223호선	L=411m, B=12m	L=411m, B=6m	
중로3류 224호선	L=118m, B=12m	L=118m, B=12m	
중로3류 225호선	L=505m, B=12m	L=505m, B=12m	
중로3류 226호선	L=60m, B=12m	L=60m, B=2m	
소로1류 6호선	L=121m, B=12m	L=121m, B=12m	
교차점광장	A=2,735㎡	A=2,73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79(쌍암동 657-6) 쌍둥이빌딩 301호
- 성 명 :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 : 2019.9.2. ○ 준공예정일 : 2022.2.17.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토지조사 및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조정

토 지 조 서

□ 공사명 :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 중로2-503 (변경없음)
- 중로3-222 (변경없음)
- 중로3-223 (변경없음)
- 중로3-224 (변경없음)
- 중로3-225 (변경없음)
- 중로3-226 (변경없음)

7. 소로1-6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	동					주소	성명	
1	북구	용두동	산93-3	입	195	19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701호 (구갈동)	김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아파트 25-705	김경영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8	김형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8	김진엽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211동 905호(도화동, 현대2차아파트)	김봉연	
							광주광역시 북구 북룡길38번길 27-5(신용동)	김오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3길 34-11(사동)	김영연	
							광주광역시 북구 북룡길38번길 22(신용동)	김부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403호(유산동)	김경연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길 14-11(유동)	김민자	
서울특별시 정북구 한천로69길 40(석관동)	김진신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77, 비동 2047호(압남동)	김진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27, 110동 1602호 (봉천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김상지								
1	북구	용두동	산93-3	입	195	195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24번길 9, 109동 2209호(금호동, 대우파크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50, 101동 905호(일곡동, 광주일곡대우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50, 101동 905호(일곡동,	김정철 박성연 김권준	

						광주일곡대우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50, 101동 905호(일곡동, 김형석 광주일곡대우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110동 1303호(야탑동, 장미마을) 김현자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32, 201동 904호(내손동, 김홍연 반도브라빌리지2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동로258번길 10, 102동 1005호 (신가동, 김영옥 우미이노스빌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5, 101동 406호 (운암동, 김영숙 별산블루밍베갯씨티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40, 101동 609호(녹번동, 김영순 현대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14, 301동 1006호 (진월동, 김정균 신홍타운) 광주광역시 북구 북룡길24번길 46(신용동) 김근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91, 9동 1211호 (서초동, 김유정 무지개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07, 103동 108호 (상도동, 김기태 삼호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금비석로14길 8, 206동 107호(중계동, 주공아파트) 김병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9길 22, 109동 703호 (동작동, 김상우 이수힐스테이트 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3길 28, 204동 1804호 (중계동, 김정은 양지대림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12동 1203호 (진관동, 김상호 은평뉴타운 구파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15, 206동 1101호(언남동,하마마을 동일하이빌2차아파트) 김민서				
2		“	용두동 신용동	640-22	도	409	409		국(농림축산식품부)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당초 변경
3		“	용두동 신용동	산1	임	372	372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외촌길 3 (삼각동)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당초 변경
4		“	용두동 신용동	636-23	답	87	87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522	송태운	당초 변경
5		“	용두동 신용동	636-22	장	97	97	광주광역시서구지정로96번길 15, 814호(치평동, 르간티움파크 제8층)	문지훈	당초 변경
6		“	용두동 신용동	640-21	구	31	31		국(농림축산식품부)	당초 변경
7		“	용두동 신용동	637-15	답	358	35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47, 206호(송의동)	김계연	당초 변경
		소계				1,544				

8. 교차점광장 (변경없음)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5호

광주북구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중로 2-22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05(2021.9.1.)호로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급히 조정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062-410-672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3	227	12	국지 도로	72	소로1-215	동림동 200담	일반 도로		범면포함 (A=1,008㎡)
기정	중로	3	228	12	국지 도로	72	소로1-217	동림동 산 90일	일반 도로		범면포함 (A=1,880㎡)
변경	중로	3	228	12	국지 도로	72	소로1-217	동림동 산 90일	일반 도로		범면포함 (A=1,788㎡)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28	중로3-228	도로구역(범면) 조정 (범면면적: 1,880㎡ → 1,788㎡, 감 92㎡)	중로 3-228호선 범면 면적 조정

나.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21-136호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소로2-40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흥동 주상복합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 시행을 위한 광주도시계획시설(소로2-400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4항, 제2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지구단위계획 구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중점부 면적변경 (폭원)

구분	시설명				구 모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400	8-12	국지	460	문흥동 대1-2	문흥동 중1-48	일반 도로	전고96 * 86.06.04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류 400호선	소로 2류 400호선	도로면적 4,156㎡ → 4,189㎡ 증) 33㎡	도로중점부 폭원 8.0m 미만구간 8.0m 폭원으로 확장

3. 열람기간 : 2021.10.00~10.00

4.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410-6729)

○ 관계도면 게재는 생략하고 열람장소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8호

큰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큰샘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 11. 0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큰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조서 : “덧붙임”
- 큰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도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062-410-6446)

큰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변경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123	어린이공원 (도시계획구역권)	큰샘어린이공원	3,830.0	3,790.1	광주 북구 중흥동 531번지 일원	

2. 공인지정현황

- 공 원 지 정 고시 : 2016. 04. 01.(광고58호), 변경 2018. 08. 09.(광고169)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18. 04. 01.
- 변 경 사 유 : 우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3,830.0㎡ ⇒ 3,790.1㎡) 및 공원 내 동선(소로) 변경

3. 법적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률(법정 60%이하)	42.48%	42.35%	

4. 큰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시설 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830.0	3,790.1	-	-	-	-	
시설 소 계		1,627.0	1,605.0	-	-	-	-	시설률 기정 42.48% 변경 42.35%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937.0	915.0	-	-	-	-	
휴양 시설	파고라 등	125.0	125.0	-	-	-	-	
유흥 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350.0	350.0	-	-	-	-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 등	215.0	215.0	-	-	-	-	
관리 시설	공원안내관 등	-	-	-	-	-	-	
녹지 및 기타		2,203.0	2,185.1	-	-	-	-	녹지율 기정 57.52% 변경 57.65%

나. 조성계획 시설 결정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3,830.0				
	변경				3,790.1				
	기정		시설 소 계		1,627.0				= 시설률-42.48%
	변경				1,605.0				= 시설률-42.35%
도로 및	기정		소 계		937.0				

광장	변경				915.0					
	기정		도로	공원	526.0	8개소				
	변경		도로	〃	504.0	7개소				
	기정	1	광장	〃	411.0					
	기정	1-1	광장 1	〃	50.0					
	기정	1-2	광장 2	〃	15.0					
휴양 시설	기정	1-3	광장 3	〃	346.0					
	기정	소	계		125.0					
	기정	2	휴게소	공원	125.0					
	기정	①	파고라	〃	-	2EA				
	기정	②	평의자	〃	-	6EA				
	기정	③	앉음벽	〃	-	L=68.5m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350.0					
	기정	3	어린이놀이터	공원	350.0					
	기정	④	조합놀이대	〃	-	1EA				
	기정	⑤	그네	〃	-	1EA				
	기정	⑥	흔들놀이	〃	-	1EA				
	기정	⑦	이혼놀이	〃	-	1EA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215.0				
기정		4	베드민턴장	공원	175.0					
기정		5	테니스장	〃	40.0					
기정		⑧	운동기	〃	-	1EA				
기정		⑨	운동기	〃	-	1EA				
기정		⑩	운동기	〃	-	1EA				
기정		⑪	운동기	〃	-	1EA				
기정		⑫	운동기	〃	-	1EA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기정	⑬	공원안	공원	-	1EA			
		기정	⑭	관스	〃	-	91.0m			
	기정	⑮	CCTV	〃	-	1EA				
	녹지	기정	소	계		2,203.0				*녹지율:57.52%
변경					2,185.1				*녹지율:57.65%	

다. 도로결정조서

등급	변경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기정	총계		207.0	526.0				
	변경			195.0	504.0				
소로	기정	3-1	3.0	81.0	245.0	연결로	광장 1	공원경계	가각포함
	변경	3-1		87.0	261.0	연결로	광장 1	소3-5	
	기정	3-2	2.0	15.0	47.0	진입로	공원경계	소3-1	가각포함
	변경	3-2		12.0	37.0	진입로	공원경계	소3-1	가각포함
	기정	3-3		5.0	16.0	연결로	광장 3	소3-1	가각포함
	기정	3-4		5.0	16.0	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소3-1	가각포함
	기정	3-5		58.0	116.0	진입로	광장 3	소3-1	가각포함
	변경	3-5		55.0	112.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3	가각포함
	기정	3-6		19.0	38.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3	
	기정	3-7		12.0	24.0	진입로	소3-5	공원경계	
기정	3-8	12.0	24.0	진입로	공원경계	소3-5			
변경	-	-	-	-	-	-	-	폐지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846호

부의 안전 공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 회 보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의 안전을 공고합니다.

2021. 10. 25.

광주광역시

□ 안전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765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관계인 의견청취 공고

유동 대광로제비양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류 1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복구 유동 120-3번지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중로 3-1호선) 사업
 - 명 칭: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노선명	노선규모	금회시행			비고
		연장	시점	종점	
중로3-1호선	L=3,900m, B=15m	L=104m, B=15m	유동 120-4	유동 93-1	개설기부채납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유동지역주택조합 대표이사 조 영 덕
 - 주 소: 광주광역시 복구 북문대로 14, 4층(운암동, 4층)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2022. 0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7. 관계도서: 계계 생략(복구청 도시건축과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1. 11. 1. ~ 2021. 11. 15.(14일간)
 - 장 소: 광주광역시 복구청 도시건축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도시건축과(☎062-797-28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광주광역시 복구	부 입 223	도	7,713	260	7,453	국토교통부		
2	광주광역시 복구	부 유 87-1	대	7,643	338	7,305	유동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복구 북문대로 14, 4층 (운암동, 4층)	
3	광주광역시 복구	부 유 87-4	대	7,120	500	6,620	유동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복구 북문대로 14, 4층 (운암동, 4층)	
4	광주광역시 복구	부 유 120-3	도	21,276.1	1,198	20,078.1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복구	부 유 81-5	대	3,655	70	3,585	기획재정부		
6	광주광역시 복구	부 유 135	도	626	3	623	국토교통부		
총계		6필지		48,033.1	2,369	45,664.1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위한 사전절차 및 관계인 의견청취 공고

용두동 초등학교 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절차 의견청취 공고합니다.

2021. 11. 1.

광주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성 사업
 - 사업의 명칭 : 용두동 초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84	학교	초등학교	북구 용두동 460-1번지 일원	12,954	북고2020-77호 (2020.5.1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동광주웨딩프라자)
 - 성 명 : ㈜휴먼시티 대표 김형훈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 성 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 박순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60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붙임,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 11. 1. ~ 2021. 11. 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초일미산입)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복구청 도시건축과(☎062-410-67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평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1	광주 북구 용두동	460-1 전	386	386	최적지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281	광주광역시 복구청	영광군 영광읍 배화리 381-23	합평군인해보면 문장리 822-117	근저당
					최경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63-9				
					장운경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99, 106동1601호(충효동, 모아타운)				
					신영부동산신탁(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길 1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2	광주 북구 용두동	461-1 대	330	330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3	광주 북구 용두동	467-1 대	596	596	박삼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67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67				
4	광주 북구 용두동	468-1 대	648	648	주무공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포스코퍼낸엑스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52, 105동 204호(차량동, 상무저구현대아파트)				
5	광주 북구 용두동	471-1 답	215	215			김민영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52, 105동 204호(차량동, 상무저구현대아파트)			
							김은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길 8 101동 1302호(봉선동, 모아앨가아파트)			
							김정옥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102동 1503호(두암동, 무등파크맨션)			
							김지은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90-13, 206호(삼각동)			
							김철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00, 101동 103호(소촌동, 소촌중모아앨가)			
							김태우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74번길 8 101동 1302호(봉선동, 모아앨가아파트)			
							마중섭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103동 1007호(운림동, 라인라파트)			
							문숙연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377, 105동 1601호(월남동, 월남호반베르디움1차)			
							민의경	광주광역시 북구 근왕로 311, 102동 3202호(각화동, 서희스타힐스)			
							배운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도149번길 11, 307동 606호(금호동, 호반리젠시빌)			
							배후상	광주광역시 북구 근왕로 181번길 26-2(두암동)			
							송성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원로 394번길 39-13(신가동)			
							오수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마을길 157-22, 110동 603호(본촌동, 힐스테이트본촌)			
							오수연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길 2, 106동 704호(용산동, 광주용산캐프리슈빌)			
							오영록	광주광역시 북구 근왕로 311, 102동 3202호(각화동, 서희스타힐스)			
							유혜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11, 201동 204호(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2단지)			
임영택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도 149번길 11, 307동 606호(금호동, 호반리젠시빌)										
정영석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377, 105동 1601호(월남동, 월남호반베르디움1차)										
조강현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73번길 70(용흥동)										
주최희사 휴먼시티	광주광역시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동광주웨딩프라자)										
최현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436-20, 104동 702호(혹석동, 수안센터리시티서희스타힐스)										
6	광주 북구 용두동	472 대	456	456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7	광주 북구 용두동	473-2 전	390	390	조문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52동 503호					
8	광주 북구 용두동	산87-1 입	397	397	(주)휴먼시티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동광주웨딩프라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313(신촌동)			근저당, 지상권	
9	광주 북구 용두동	산87-2 입	264	264	(주)휴먼시티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동광주웨딩프라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시축산업대로313(신촌동)			근저당, 지상권	
10	광주 북구 용두동	산87-4 입	4,180	4,180	(주)휴먼시티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동광주웨딩프라자)	광주문화관광광역시신영협동북구 문산로 38(문흥동)			근저당, 지상권	
11	광주 북구 용두동	산87-5 입	1,580	1,580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12	광주광역시 용두동 1	산88-1	입	253	253	노복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평덕로 156, 101동1204호(청천아파트)								
						김미숙	광주광역시 용두동 학동 평화맨션 3동 1206호								
						김대호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173번길 10, 301동 315호(문흥동,중흥파크맨션)								
						김양관	광주광역시 남구 용정길 21, 103동 607호(주월동,경남아파트)								
						김영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60, 101동 201호(일곡동,한일아파트)								
김성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2길 25-1(초지동)														
13	광주 북구 용두동 2	산88-1	입	603	603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길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14	광주 북구 용두동 3	산88-1	입	42	42	강봉금	광주 서구 내방동 841-9 한성아파트 1층 108호	광주농업협동조합 569-5 이준호	광주광역시 북구 동광동 501-1	근저당, 지상권					
15	광주 북구 용두동 4	산88-1	입	406	406	㈜유민시티	광주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동광주혜영프라자)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225(대인동)	근저당, 지상권					
16	광주 북구 용두동 5	산88-1	입	1,049	1,049	조옥자	광주 서구 화정동 1062 신동아파트 102-1208								
17	광주 북구 용두동 6	산88-1	입	1,095	1,095	신영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3길 16, 8층(여의도동,신영증권빌딩)								
계	17필지			12,890	12,890										

※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값소 64㎡ 탈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21-2074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사전열람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71호선, 소로 2-177호선)인 **신가동 그린빌라 주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하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광 산 구 청 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신가동 그린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연장(m)	시 점	종 점
계					199		
비아 소로2-171호선	142	8	신가동 600-51	신가동 601-2	48	신가동 600-51	신가동 601-2
비아 소로2-177호선	564	8	신가동 594-16	신가동 786-9	151	신가동 215-4	신가동 756-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 2-171호선, 소로 2-177호선)

○ 명 칭 : 신가동 그린빌라 주변 도로개설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9. 12. 2.)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2019. 12. 2.)

○ 준공예정 :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준공예정일/ 2021. 12. 1.)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준공예정일/ 2024. 12. 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1. 10. 25. ~ 2021. 11. 08.)

○ 장 소 : 광산구청 5층 건설과 (062-960-8564)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변경)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부면적(㎡)	변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리구분	성명	
합 계	12필지			3,283	1,928						당초
합 계	12필지			3,283	1,928						변경
1	광산구 신가동	756-4	도	383	38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987-1 신월시영아파트1-207	정진호			당초
	광산구 신가동	756-4	도	383	383		-	광산구			변경
2	광산구 신가동	756-13	담	304	304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림로 301-19(신가동)	김정순 외1인	근저당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225
	광산구 신가동	756-13	담	304	304		-	광산구			변경
3	광산구 신가동	212-9	철	8	8		대전 서구 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당초
	광산구 신가동	212-9	철	8	8		-	광산구			변경
4	광산구 신가동	597-42	담	125	125		광주 서구 금호동 743-2 대주아파트 101동 806호	홍권석	근저당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광산구 신가동	597-42	담	125	125		-	광산구			변경
5	광산구 신가동	600-49	구	424	4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당초
	광산구 신가동	600-49	구	424	4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6	광산구 신가동	216-3	대	139	1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당초
	광산구 신가동	216-3	대	139	1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변경
7	광산구 신가동	215-4	대	172	17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당초
	광산구 신가동	215-4	대	172	172		-	광산구			변경
8	광산구 신가동	600-51	구	73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당초
	광산구 신가동	600-51	구	73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9	광산구 신가동	214-6	대	11	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당초
	광산구 신가동	214-6	대	11	11		-	광산구			변경
10	광산구 신가동	597-41	담	2	2		광주 서구 금호동 743-2 대주아파트 101동 806호	홍권석	근저당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광산구 신가동	597-41	담	2	2		-	광산구			변경
11	광산구 신가동	601-2	도	1,077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당초
	광산구 신가동	601-2	도	1,077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12	광산구 신가동	600-3	구	565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당초
	광산구 신가동	600-3	구	565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

※ 편입토지 등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1-0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에 따라 광주그린카진흥원 김덕모 원장의 주식백지신탁 체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 속	광주그린카 진흥원	직 위 (직급 등)	원 장	성 명	김덕모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현대차	4,700주	매각	975,250	* 21.10.21.	KB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84주	매각	22,470	* 21.10.21.	KB증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 22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과정에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개정 (안 제4조)
- 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내부위원의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개정 (안 제6조 제2항)
- 다. 내부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개정 (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1. 11. 1.(월) ~ 2021. 11. 22.(일) <21일간>
 - 2) 부패영향평가: 평가기관에 평가 요청
 - 3) 성별영향평가: 평가기관에 평가 요청

4.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감(참조: 교육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aw.gen.go.kr/xlegislation/index.php>) 상단의 “자치법규/현행자치법규” 란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

▷ 주소: 61987,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 전화번호 : 062-380-4515, FAX : 062-380-4626

붙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개정 (안 제4조)
- 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내부위원의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개정 (안 제6조 제2항)
- 다. 내부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개정 (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1. 11. 1.(월) ~ 2021. 11. 22.(일) <21일간>
- 2) 부패영향평가: 평가기관에 평가 요청
- 3) 성별영향평가: 평가기관에 평가 요청

붙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훈령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내부위원 4명”을 “내부위원 2명”으로, “외부위원 3명”을 “외부위원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생략)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생략)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④ 내부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행정국장----- ----- ----- -----.

지 장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이용형태	비고
1	용두동	467	대	주택	1동	거주	건축물대장 주1 1층 61.48㎡ 부1 1층 0.99㎡
2	용두동	472	대	주택	주택1동 부속사2동	거주	건축물대장 주1 1층 47.93㎡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20. 12. 22.]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